

## 질병휴직 대상자 현황

1	인적 사항	성 명		직 급(직 위)	
		부서명		생년월일	
		담당업무			
	휴직 명령 기간 <sup>1)</sup>	년 월 일 ~ 년 월 일			
	실제 휴직 기간 <sup>2)</sup>	년 월 일 ~ 년 월 일			
	임용심사위원회 <sup>3)</sup>	실시 [ ]      미실시 [ ]			
	공무상질병휴직 <sup>4)</sup>	해당 [ ] (요양 승인 기간 등 <sup>5)</sup> : 년 월 일 ~ 년 월 일 미해당 [ ]			
2	인적 사항	성 명		직 급(직 위)	
		부서명		생년월일	
		담당업무			
	휴직 명령 기간 <sup>1)</sup>	년 월 일 ~ 년 월 일			
	실제 휴직 기간 <sup>2)</sup>	년 월 일 ~ 년 월 일			
	임용심사위원회 <sup>3)</sup>	실시 [ ]      미실시 [ ]			
	공무상질병휴직 <sup>4)</sup>	해당 [ ] (요양 승인 기간 등 <sup>5)</sup> : 년 월 일 ~ 년 월 일 미해당 [ ]			
3	인적 사항	성 명		직 급(직 위)	
		부서명		생년월일	
		담당업무			
	휴직 명령 기간 <sup>1)</sup>	년 월 일 ~ 년 월 일			
	실제 휴직 기간 <sup>2)</sup>	년 월 일 ~ 년 월 일			
	임용심사위원회 <sup>3)</sup>	실시 [ ]      미실시 [ ]			
	공무상질병휴직 <sup>4)</sup>	해당 [ ] (요양 승인 기간 등 <sup>5)</sup> : 년 월 일 ~ 년 월 일 미해당 [ ]			

### 작성요령

- 1) 휴직 명령 기간 : 발령을 낸 휴직기간(휴직 명령서 작성) / 2) 실제 휴직 기간 : 실제 휴직한 기간(복직서 작성)
  - 3)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임용심사위원회에 자문 할 수 있음(임의). 단, 공무상질병휴직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의견을 거쳐야 함(필수).
  - 4) ① 질병휴직 중 공무상 요양승인 등을 받은 경우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소급 변경 가능  
 ② 요양 승인 기간 등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연장할 수 없음(재요양 승인 필요)  
 - 단, 공무원임용령(제32162호) 부칙2조에 따라 시행일( '21.12.9.) 당시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자가 그 시행일 이후에도 해당 휴직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요양 승인 기간 등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- 5) (공무원 재해보상법) 공무상 요양 승인, 재요양 승인 기간 / (산업재해보상보험법) 요양급여 결정, 재요양 결정 기간
- ※ 첨부서류 예시 : 진단서(또는 소견서), 요양승인 결정서 등